

소상공인·중소기업,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

2022. 12.

금 융 위 원 회

목 차

1. 배경	1
2. 현황 및 문제점	2
가. 중소기업·소상공인 분야	2
나. 新산업 혁신기업 분야	3
3. 제도개선 방안	4
가. 신용정보원 기업신용정보 시스템 혁신	4
나. 新산업분야 신용정보원 혁신기업 정보 공유 활성화	5
다. 기업CB 진입규제 합리화 및 데이터전문기관 확대	6
라. 개인사업자 본인신용관리업(MyData) 도입 검토	8
4. 향후 추진계획	10

1. 추진배경

- 「신용정보법」 개정(‘20.2.) 등을 통해 소비자금융(Consumer Finance)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시행
 - (마이데이터 도입)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개인신용정보를 집중·관리·분석하여 고객별 맞춤형 금융서비스, 재무 컨설팅 등 제공
 - (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) 신용등급 점수제 전환, 비금융전문CB* 도입 등을 통하여 개인신용평가의 공정성·정확성 등을 제고
 - * 금융거래력이 부족한 청년·주부 등을 위해 통신료·공과금 납부정보 등 비금융정보만으로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신용평가회사
- 기업정보 분야의 경우 기업CB 허가단위 세분화, 진입규제 완화 등 제도적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
 - 그러나 소상공인·중소기업, 新산업분야 등은 신뢰성 있는 거래정보 미흡 등으로 기업금융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여전히 부족
 - (기업CB) 금융권 거래 실적, 기업이 공시·제출하는 재무정보 등 대기업·중견기업 위주의 정보 수집·활용
 - (신정원) 금융권 기업여신 정보를 수집·공유하고 있으며, 개인신용정보에 비해 수집항목, 정보공유 적시성 등 미흡
- 이에 따라 소상공인·중소기업 및 新산업분야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적정·적시 자금공급 및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에 한계

⇒ 데이터 사각지대 분야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하여 금융권의 효과적인 자금공급 및 리스크관리 지원 필요

2. 현황 및 문제점

◇ 이해관계자 의견수렴* 등 결과, 기업금융 분야에서 데이터 부족으로 효과적인 금융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대표적 분야는 ①중소·소상공인, ②新산업분야 등임

* 은행권, CB사, VC, 비금융 플랫폼 사업자 등 회의 결과

가. 중소기업·소상공인 분야

□ (현황) 중소기업·소상공인은 기초적인 정보 부족 등으로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확보가 어렵고, 자체적인 데이터 관리 역량도 미흡

○ 대기업*과 달리 금융권이 기업금융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적고, 자체적인 데이터 관리·활용 등을 위한 인력·설비 부족

* 상장기업 등 대기업의 경우 분기별 재무·경영실적 공시, 외부감사, 신평사·기업CB사 리포트 등 다양한 정보가 정기·수시로 생산·유통

○ 기업CB 등도 인력·규모 등의 한계*로 별도 의뢰기업 외에는 대기업·중견기업 위주로 정보 생산·공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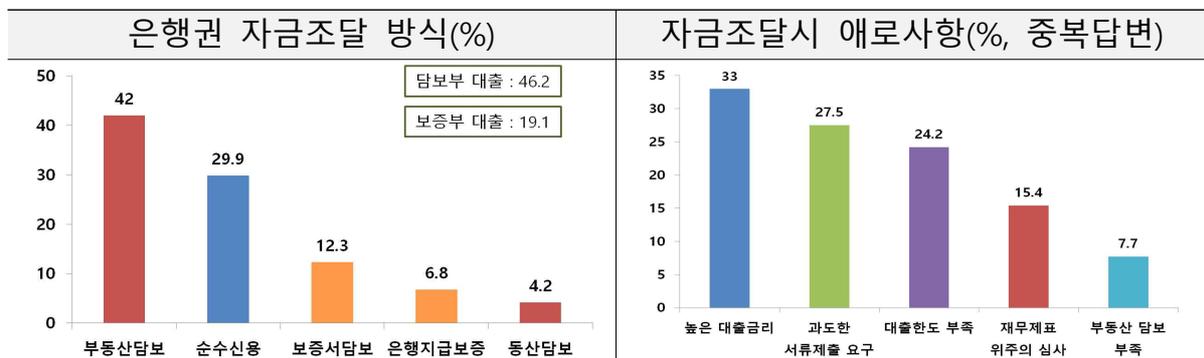
* 직원현황('21년말, 명) : (NICE평가정보) 708, (KoDATA) 467, (이크레더블) 176

※ 해외 CB사 직원현황 : (Experian) 20,600, (Equifax) 13,000, (Transunion) 10,800

□ (한계) 우량기업도 금융거래이력이 부족한 경우 실제 신용과 금융거래 조건간 괴리가 발생하는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 부담

○ 금융거래시 부동산 담보, 보증 등 신용보강이 광범위하게 요구되거나, 낮은 대출한도 및 높은 금리 등 불이익을 부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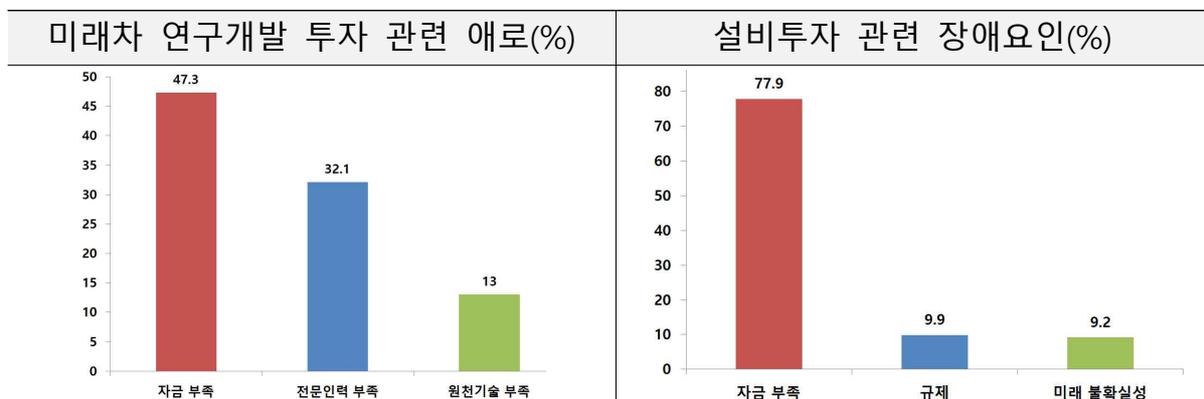
<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금융애로 조사결과('21년) >



나. 新산업 혁신기업 분야

- (현황) 디지털화, 산업간 융·복합화 등으로 스타트업·벤처뿐만 아니라 기존 전통산업분야 기업도 新산업분야로 사업재편이 활발하게 진행
 - 그러나 新산업분야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금융권 일선 여신심사인력 등의 충분한 이해에 한계
 - 보수적 여신심사관행과 맞물려 신용평가·여신심사 과정에서 新산업·기술의 혁신성·성장잠재력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
 - 新산업의 특수성 등을 반영하지 않고 기존 전통산업 중심의 산업별 익스포저·리스크 관리
- (한계) 新산업분야 데이터 부족 등에 따른 평가 및 여신심사의 어려움으로 新산업분야에 대한 금융권 자금의 과소공급 발생
 - 산업구조 변화, 원청기업 요구 등에 따라 新산업분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협력업체, 스타트업 등의 자금절벽 초래
 - 이에 반해 기존 일부 전통산업 등으로 자금쏠림 발생 가능
 - 비효율적 자금공급, 잠재리스크 확대 우려

< (참고) 자동차 업계 경영 및 미래차 전환 실태조사(자동차산업연합회, '21.12월) >



3. 제도개선 방안

◇ 기업금융 역량 제고를 통하여 **중소기업·소상공인** 등의 **데이터 사각지대**를 해소하고 기업의 **원활한 자금조달**을 지원

- ① 신용정보원의 기업 데이터 집중·공유를 대폭 확대·세분화하여 다량·양질의 데이터를 금융권에 공급
- ② 신용정보원에 집중되고 있는 **新산업분야** 혁신기업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활성화
- ③ 기업CB 진입규제를 합리화하고 빅데이터 생태계의 인프라인 데이터전문기관 저변 확대
- ④ 개인사업자 특화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(‘내 손 안의 경리’) 도입 검토

가. 신용정보원 기업신용정보 시스템 혁신

□ 신용정보원 집중·활용 대상 기업정보를 확대 및 세분화하고, 기업정보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제고

① (정보항목 확충·세분화) 신용이력정보 집중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세분화하여 보다 정교한 신용평가 지원

- ▶ (현행) 기업별 여신잔액 정보, 원금연체금액, 이자연체여부 →
- ▶ (개선) 기업대출 세부현황(만기일자, 금리, 서민금융상품 코드, 담보유무·종류 등), 10일 이상 연체 세부현황(원금연체금액, 이자연체금액, 연체사유 등), 기업카드 이용·청구·결제 실적, 보험계약대출 등

② (계좌별 정보제공) 기존 차주별 관리체계를 차주계좌별로 세분화하여 자금용도별 기업금융현황 파악 지원

- ▶ (현행) 기업별(차주별) 신용정보 집중·관리 →
- ▶ (개선) 기업의 단위계좌별(차주계좌별) 신용정보 집중
 - * 기업은 통상 사업의 종류, 자금용도 등에 따라 계좌를 분리·활용 → 단위계좌별 데이터 관리로 자금용도별 기업금융 현황파악 가능

< 신용정보원 기업신용정보 시스템 개선 >

< 현행 >

금융기관	대출잔액	만기구조	
		3월초과 6월이하	6월초과 1년이하
○○은행	2억 5천만원	5천만원	2억원
□□은행	1억원	-	1억원



< 개선 >

금융기관	계좌번호	용도	대출일자	만기일자	대출잔액
○○은행	123456	운전자금	'20.12.11	'22.12.10	5천만원
○○은행	123789	시설자금	'21.09.15	'23.09.14	2억원
□□은행	987654	시설자금	'18.07.02	'23.07.01	1억원

③ (적시성 제고) 최신의 정보를 활용하여 평가의 적시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업신용정보 집중·공유 시차 단축

- ▶ (현행) 기업신용공여정보 집중 후 4영업일 뒤 공유 →
- ▶ (개선) 기업신용공여정보 집중 후 즉시 공유

기대효과

√ 금융회사는 보다 정교한 기업금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신용평가 및 리스크 관리 고도화 가능

나. 新산업분야 신용정보원 혁신기업 정보 공유 활성화

□ 新산업분야 혁신기업에 대한 기술력 평가결과 및 정책금융 정보의 금융권 공유·활용 활성화

① (기술신용정보 활용시스템 구축) TCB 평가결과, 주요 기술관련 평가내용 및 근거정보* 등을 다른 은행에도 공유

* 기술등급(T등급), 연구개발인력 수, 인증·수상 건수, 지식재산 보유건수 등

- ▶ (현행) TCB 평가결과(기업개요, 기술신용등급, 기술역량·사업역량 평가근거, 세부항목 등급 등)를 신청원에 집중(공유X)
- ▶ (개선) TCB 평가결과의 주요내용을 전 은행권에 공유

② (IGS* 참여기관 확대) 민간 금융권이 新산업분야 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참여하는 경우, 금융지원 현황·성과 데이터망(IGS)에 민간 금융권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

* 혁신성장 인텔리전스 시스템(Innovation Intelligence Growth System, '19년 구축) : 정책금융 지원현황, 지원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해 기업별·산업별 정책금융 현황, 기업의 고용·재무·기술경쟁력·특허기술력 정보 등 제공

- ▶ (현행) 대출·투자·보증 등 정책자금 지원정보, 정부 R&D 보조금 지원정보, 재무·고용정보 등 지원효과를 8개 정책금융기관*이 제공·활용
* 산은, 기은, 수은, 신보, 기보, 성장금융, 중진공, 무보
- ▶ (개선) 제공·활용기관을 은행권으로 확대

기대효과

√ 금융회사는 다량의 기술신용정보, 정책금융 지원현황·효과를 활용하여 신평가모형 고도화, 혁신기업에 대한 민간부문의 원활한 자금공급이 가능

다. 기업CB 진입규제 합리화 및 데이터전문기관 확대

□ (진입규제 합리화)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해 금융권 자금공급·리스크관리 등을 지원하는 기업CB 진입규제 합리화

○ (기업신용등급제공업) 기업은 개인과 달리 산업별·규모별·성장단계별 편차가 크나 현재는 재무평가 위주의 다소 획일적인 신용평가모형을 활용 → 새롭고 차별화된 서비스가 필요

- 기업CB는 개인CB*와 달리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거의 없으며 주로 기업간 거래에 활용

* 개인CB는 대다수 국민들에 대한 신용점수를 산출하며, 신용점수는 대출·카드발급 등 금융거래, 서민금융 상품 지원대상 선정 등 광범위하게 활용

⇒ 금융회사 출자의무 폐지*를 통하여 비정형·비금융 데이터를 다량 보유한 사업자의 신규진입 허용

* 기업정보조회업의 경우 라이선스 도입시('20.8월) 금융회사 출자의무 배제

** 자본시장법상 신용평가회사의 경우 금융회사 출자의무 규제 없음

- (기술신용평가업(TCB)) 기술평가 분야의 다양성·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품질경쟁*을 촉진할 수 있는 신규 사업자 필요

* 신용정보법 개정(20.2월)시 경쟁강화를 위해 특허·회계법인의 진입을 허용하였으나, 특허법인 1개사만 추가진입한 상황

- TCB 평가결과는 기술기업에 대한 은행 여신심사에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*을 미치므로 금융회사 출자의무는 유지

* 기술금융은 일반대출에 비해 평균 대출금리가 낮고(기술금융 3.10%, 일반 3.24%) 대출금액은 큼(기술금융 3.41억원, 일반 1.33억원)

- ⇒ 충분한 기술력 평가역량을 보유한 여타 전문기관*을 허가 신청 가능 사업자로 추가

* (예시) 「발명진흥법」에 따른 발명의 평가기관(특허청 지정), 「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술평가기관(산업부 지정)

- 차별화된 신용평가모형 개발 없이 과당경쟁에 따른 등급쇼팽 확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장치 마련

- 사업계획 타당성 심사 강화, 영업행위 규칙 재정비, 기업 평가모형에 대한 전문가 검증* 실시 등의 방안 검토

* 개인CB·개인사업자CB의 경우 신용정보원의 '개인신용평가 검증위원회'에서 연 1회 신용평가모형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해 평가 실시

- (데이터전문기관 저변 확대) 데이터 결합이 빅데이터 및 AI 활용 활성화의 기반임을 감안할 때 데이터전문기관 지속 확대 필요*

* 비금융분야 데이터전문기관 22개, 금융분야 데이터전문기관 4개

- 양질의 데이터를 다량 보유하고 데이터 활용이 활발한 기관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시 데이터 결합 및 데이터 개방·공유 촉진* 가능

* 데이터전문기관은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와 제3자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스스로 활용하거나 제3자 제공 가능

- 한편, CB사는 데이터 결합을 가장 활발히 이용중으로 충분한 가명정보 관리 경험과 활용 인프라를 보유
 - 그러나 CB사 경영·부수업무로 데이터전문기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CB사가 데이터전문기관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
- ⇒ 양질의 대규모 데이터 및 데이터 처리·활용 역량을 보유한 CB사를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대상군에 포함

기대효과

- √ (기업신용등급제공업) 플랫폼 사업자 등 기업 데이터를 다량 보유한 신규 사업자가 진입해 다양한 금융·비금융 정보 확충 및 기업신용평가 고도화 가능
- √ (TCB) 전문인력 및 평가기법을 보유한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여 산업별·기술별 보다 정교하고 심도있는 평가 가능 ⇒ "가격경쟁" → "품질경쟁"으로 전환
- √ (데이터전문기관) CB사는 그간 축적한 노하우를 활용하여 결합 대상 데이터 추천, 데이터 분석 컨설팅 등의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해 중소기업 및 핀테크 스타트업 등의 데이터 혁신 지원
 - 자체 보유 데이터와 플랫폼 사업자 등의 매출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결합해 개인사업자 대안신용평가모형 고도화 등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 개발 촉진

라. 개인사업자 본인신용관리업(MyData) 도입 검토

- 개인사업자 데이터를 수집·관리하여 맞춤형 사업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('내 손 안의 경리') 도입 검토
- (문제점) 개인사업자는 금융회사·플랫폼 사업자 등 정보보유자에 비해 협상력이 낮아 자신의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곤란
 -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인력·예산 한계 등으로 이를 경영관리, 금융거래 등에 활용할 역량이 부족
- (시장현황) 개인사업자 증가* 등에 따라 매출관리, 사업컨설팅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, 일부 관련 서비스** 제공중
 - * 개인사업자(국세청, 개) : ('19년말) 704.3만, ('20년말) 756.5만, ('21년말) 802.9만
 - **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서비스 등
- 그러나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범위가 제한적이고,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서비스 활성화에 다소 애로

□ (개선방안) 개인뿐 아니라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령 개정* 및 인프라 구축

* (예시) 개인사업자 데이터 전송요구권 신설, 마이데이터 사업자 업무범위 확대 등

□ (정보제공범위) 수요조사 및 관련 업계 협의 등을 바탕으로 개인사업자에게 필요한 데이터 분야·항목 등을 검토

< ※ (예시)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정보제공범위 >

- ▶ (금융업권) 은행·카드·전자금융업권이 보유한 대출·예금·결제 관련 데이터
- ▶ (비금융업권) 전자상거래 기업이 보유한 상품별 판매내역(결제금액·수단 등), 반품률·반품사유 등 상세매출 빅데이터

※ 플랫폼 데이터의 필요성(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조사, 중기부)

○ 플랫폼 입점기업은 통상 복수의 플랫폼에 입점*하고 있어 분산된 매출 데이터를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가 큼

* 입점한 플랫폼 수 : (1개) 7.7%, (2개) 18.8%, (3개) 25.6%, (4개) 11.2%, (5개 이상) 36.7%

○ 플랫폼 입점기업의 약 75%는 플랫폼을 통한 매출액 비중이 50%가 넘는 등 플랫폼을 통한 매출액 비중이 높아* 플랫폼 데이터는 사업관리에 필수

* 플랫폼을 통한 매출액 비중 : (~25%) 12.2%, (25~50%) 13.6%, (50~75%) 24.7%, (75~100%) 25.9%, (100%) 23.5%

○ 고객정보 열람·이용권한을 희망하는 플랫폼 입점기업이 증가*하고 있는 등 플랫폼이 보유·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높음

* ('20년) 6% → ('21년) 14.8%

- ▶ (공공부문) 납세내역, 4대보험 및 전기·수도·가스요금 납부내역, 사업 관련 증명서 등 영업활동 입증에 필요한 데이터

기대효과

- √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맞춤형 자산관리, 정책자금 신청 지원, 경영 컨설팅 등 혁신적인 개인사업자 서비스 제공 가능
- √ 또한, 데이터 사각지대에 있는 개인사업자 정보의 생산·유통이 활성화되어 신용평가 고도화* 등을 통한 금융권 자금공급 및 리스크 관리기능 제고 가능
- √ 개인사업자는 산재된 자신의 데이터를 금융회사, 공공기관 등에 전송하여 기업신용도 제고, 금융거래조건 개선, 정책금융 신청 등에 활용 가능

4. 향후 추진계획

◇ 「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」 발표('22.4Q) 후 금융권의 기업금융 역량 제고를 위해 세부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

○ 개인분야 데이터 혁신*이 일단락된 만큼, 기업분야 데이터 혁신을 연이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지 표명

* 개인신용평가 점수제 도입, 마이데이터 도입, 비금융전문CB 도입 등

① (신정원 기업정보시스템 혁신) 전산개발·금융권 테스트 등을 거쳐 신규 기업정보시스템 개시('23.1Q)

② (신정원 혁신기업 정보 공유 활성화) IGS 참여기관을 시중은행으로 확대('23.1Q), 전산개발 등을 거쳐 기술신용정보 활용시스템 구축('23.2Q)

③ (기업CB 진입규제 합리화 및 데이터전문기관 저변 확대)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('23.1Q)을 통해 CB사 겸영업무를 확대하여 CB사의 데이터 전문기관 업무 수행을 허용

○ 신용정보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('23.4Q)을 통하여 기업신용등급제공업 및 TCB의 허가신청 가능 사업자 추가

④ (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검토) 마이데이터 업무범위·정보전송 방식 등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방안 검토('23.2Q)

○ 데이터 개방범위, 데이터 전송방법, 비용 부담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간 이견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, 워킹그룹 등을 구성('23.1Q)하여 광범위한 의견수렴 추진